

미술은 산업이다

1. 30.
am 10:00

미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일시 | 2020년 1월 30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주관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사단법인 한국조각가협회,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국회세미나」

미술은 산업이다

-미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사회: 이후창 (사단법인 한국조각가협회 사무국장)

모두발언

- 김 학 용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장)
- 김 정 희 (사단법인 한국조각가협회 이사장)

세미나 주제

- 작가 권익문제와 ‘공공미술 진흥기금’ 활용방안
이 재 언 (미술평론가)
-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 쟁점
이 성 옥 (조각가, TF위원회 공동위원장)
- 공공조형물 건립에 있어 입찰방식에 대한 제도개선
유 재 흥 (조각가, TF위원회 위원)

목 차

- 주제 1. 작가 권익문제와 ‘공공미술 진흥기금’ 활용방안 7
이재언(미술평론가)
- 주제 2.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 쟁점 -서울시 및 경기도를 중심으로- 23
이성옥(조각가, TF위원회 공동위원장)
- 주제 3. 공공조형물 건립에 있어 입찰방식에 대한 제도개선 41
유재흥(조각가, TF위원회 위원)

주제 1

작가 권익문제와 '공공미술 진흥기금' 활용방안

이재언(미술평론가)

작가 권익문제와 '공공미술 진흥기금' 활용방안

이재언(미술평론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 일명 1%법 제도가 의무화된 지 사반세기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70년대부터 급속도로 팽창해간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었던 것은 건설업이다. 고유가 호황기에 중동으로 진출하여 수출에 일익을 담당했던 건설업은 유가 호황이 하강기에 접어들자 국내로 유턴해야 했으며, 역대 정권은 경기 침체를 타개책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대형 건설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때마침 88올림픽 전후의 도시정비와 주택난은 개발 광풍을 부채질하였으며, 90년대 이래 신도시 정책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어 지금도 개발의 속도가 늦춰지지 않고 있다.

온 국토에 불어 닥친 개발광풍은 불안 기조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했지만 이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부동산 개발로 인한 자연녹지의 잠식이 빨라지고, 빈부의 차가 극심해졌으며, 급속 팽창에 따른 온갖 부작용들이 만연하게 되었다. 개발 수혜자와 소외자의 차이가 너무도 극명해졌으며, 인구밀집, 교통난, 공해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정서적으로도 피해를 준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선택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는 개발 폐해에 대한 보상책으로 나온 것으로, 이는 개발로 인해 훼손된 녹지 확보를 위해 인공조림에 의해 대체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조경 제도와 유사한 맥락이다.

1. 1% 법 제도 시행과 작가 권익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첨예한 사회현실을 배경으로 나온 것인데, 이것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삽입되어 있다 보니 마치 작가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생활 안정만을 위한 법으로 오해되고 있기도 하다. 예술가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건축주의 사유

재산 일부를 준조세로 징수하도록 하는 특혜성 조치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본래의 입법 배경이나 취지가 왜곡되어 예술가들의 생활안정만을 위한 제도처럼 호도되고 있으니, 이 제도의 시행은 초기부터 당연히 사회적으로 우호적인 시선보다는 부정적인 편견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게다가 작가가 대체로 약자이다 보니 건축주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면서 탈법적 거래에 노출되기도 하고, 심지어 암약하는 비윤리적 기획사에까지 이용당하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 왔다. 사실 건축물 미술작품은 사무용 건축물의 경우 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아 옥외 파사드에 위치해 있지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대부분 단지 내 녹지에 있어서 외부인들에게 노출이 심하지 않다. 초기에는 모자상 등의 특정 양식이나 패턴이 선호되면서 전문가들의 눈높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들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에서 설치되는 작품들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수작들이 설치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보면 도시갤러리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옥외든 옥내든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건축주 혹은 사용자나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설계되고, 또한 당국에서 시행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다단계 검증 절차들이 있어 심미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경우는 별반 없다.

현재 국내 공공미술은 크게 3가지 트랙으로 시행되고 있다. 첫째는 기존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이며, 둘째가 마을미술 프로젝트와 같이 전문작가들이 참여하여 커뮤니티가 주축이 되는 것, 셋째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기념)조형물이다. 첫째와 둘째는 다단계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비교적 심미적 측면에서 평가가 양호하다. 반면 셋째의 공공기관 발주 조형물의 경우는 사실상 전문작가의 참여나 진입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기업 독점의 프로젝트가 대부분이다. 조달청 기준으로 집행되다 보니 자격 기준 자체가 개인으로서의 작가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 주도의 랜드마크 크들이 거대, 거액 조형물들이지만, 정작 창작 역량이 우수한 작가들이 배제되는 채 복마전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발주의 조형물조차도 그 질타의 몫은 일반 작가들의 몫이 되고 있다.

이 경우는 작가의 정체성이나 개성은 말할 것도 없고, 심사 과정도 투명한 듯하지만, 허점이 많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 심사위원 후보를 투찰자가 지인들을 동원하여 다수를 차지하게 하고, 확률적으로 선정 가능성이 높도록 할 수 있는 방식이기에 아무리 심사위원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본들 관계자들이 포진한 포맷에서 공정성이 이미 훼손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생뚱한 조형물들이 시민들의 콘센서스도 없이 세워지는 공공기관 주도의 조형물들이 마치 건축물 미술작품 범주의 것인 양 호도

되고 있어 작가들의 이미지와 명예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러한 혼돈과 모순의 책임이 작가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사이, 작가들의 권익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언론 보도에서 공공미술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자주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디테일이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심층취재나 분석은 없고, 그저 작가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다. 사실 세 가지 트랙의 공공미술이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문화관광 측면에서나 교육적, 향유적 측면에서 거둔 성과들이 상당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공미술 전반에 걸쳐, 특히 권장 장려 차원에서라도 건축물 미술작품들을 선정하여 소개함으로써 건축주들이나 시공사, 주민들에게 팁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보도는 찾아보기 정말 어렵다. 세간의 인식이나 시선이 자꾸만 부정적으로 흐르는 상황이 작가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익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2. 선택적 기금제와 그 영향

이러한 부정적 여론을 등에 업고 초기부터 부단히 이 제도를 무력화시키고자 노력해온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의 주장들이 용인되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는 계속 수정과 개정이 이루어졌다. 초기 1%였던 것이 개정을 거듭하여 사실상 0.5%나 다름없는 상태로 축소되었으며, 지난 2011년에는 선택적 기금제를 병행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선택적 기금제는 외국의 1%법의 신축적 운용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 도시의 조성 배경이나 역사가 우리와 많이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참고하고 있다. 우리 처럼 부동산이 과열되어 도시의 온갖 부정적인 폐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외국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

아무튼 이마저도 최근에는 서울, 경기 광역자치기구가 이러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해진 틈을 타고 심의행정 강화에 나서고 있다. 양질의 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심의라기보다는 오히려 기금 확충을 위해 어떤 설득력이나 정당성이 부족해 보이는 방식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이 제도를 변질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일견 기금제의 시행은 명분이 있어 보인다. 소외계층 문화향유나 보다 공공성이 있는 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쓰겠다는 방향성에서 말이다. 그러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는 개발로 인한 부작용, 특히 삭막해져가는 도시환경을 위해 건축비의 일정 부분을 예술작품에 할애함으로써 보완과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명칭도 분명히 건축물이 전제되어 있으며, 이 제도의 적용 범주가 명료하고 지엄하여 초기에는 대지경계를 조금만 벗어나도 설치가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해당 건축물이라는 실체에 전적으로 귀속된 대상이다.

요컨대 건축물 미술작품은 공공미술의 영역에 속해 있기는 해도 제한적인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소유권이 건축주 혹은 사용자(입주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엄연히 자산이며, 향후 재화적 가치가 증식될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소수의 소유자 혹은 다수의 이용자나 입주자들 공동의 재산이라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 심의를 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준공필증을 거래하듯 기금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은 공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 볼 수 없다. 공공부문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면 집행기관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 할 일이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이 약300억 가량 조성되어 있다. 더욱이 이에 대한 사용 계획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계속 자발적이지 않은 기금 전환을 유도하고 지속하는 변칙적 운용은 즉각 중지해야 한다.

이러한 기금제의 변칙적 운용 양상은 미술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당연히 작가들의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공공미술은 대개의 경우 팀워크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효과 또한 적지 않다. 적지 않은 작가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마련한 시스템, 인력, 자본 등에서 심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아울러 오랜 세월동안 구축된 유관산업 기업들 역시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사실 작품 제작이나 제조 기술과 노하우도 문화산업의 중요한 축이며, 우연히 성장 발전한 것이 아니다. 오랜 경쟁 시스템을 통해 작가들의 창작역량이 눈부시게 발전하였으며, 관련 기업들은 고난도의 기술력을 갖추어가며 작가들의 아이디어와 구상을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있다. 협업 시스템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 시의 경우 조각작품 제작의 시스템과 기술, 규모 등이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제작 스튜디오들이 즐비하다. 수십 명의 조각 장인들이 종사하는 스튜디오에서는 전세계 기업, 기관, 미술관, 박물관, 유명작가 등으로부터 작품 제작을 주문 받고 있는 시의 대표적 특화산업으로 정착되어 있다. 우리의 예술작품 제조 기업들의 기술력도 이에 필적할 수준에 올라 있다. 하나의 클러스터로 결집을 이루고 있지 못할 뿐이다. 주물, 석조, 금속가공, 미디어아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로봇 등의 제어기기 및 장치 등의 시스템은 우리 예술의 경쟁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산업으로서도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창작 유관산업이 일련의 사태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림 8] F. 보테로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 피에트라산타 광장

3. 기금의 활용 방향

선택적 기금제는 일견 건축주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 당국의 모종의 방침이 암묵적으로 작용할 때, 준공이 다급한 건축주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최근 들어 심의과정 자체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좋은 작품의 설치를 권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유재산 성격이 짙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위한 본연의 취지를 외면한 채, 전혀 다른 공공프로젝트로 전용하게 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기금제 문제는 그 정당성 여부와 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금 정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선택적 기금제의 정당성 여부를 살피는 것과는 별개로, 이미 조성된 기금의 활용 문제 역시도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 8년간 선택적 기금제로 조성된 기금은 약 3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금은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와 20조에 따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용과 관리를 맡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 회계와는 구분되는 특정 목적에 따른 독립적 회계로 운영되며, 제18조 9항에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에 쓰일 것을 적시하고 있어, 이 기금을 보통 ‘공공미술 진흥기금’으로 부르곤 한다.

이 기금의 활용을 위해서는 해당 부처와 기관에서 기금운용을 기구 및 조직, 자문, 사업

수행, 평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기금 사용에 앞서 몇 가지 핵심적 방향성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 ① 협력 상대 (누구를 통해)
- ② 범위 (어디를 대상으로)
- ③ 방식 (어떤 구성과 내용으로)
- ④ 시기 (언제)
- ⑤ 규모 (얼마의 금액)

이 가운데 ④, ⑤는 상설기구에서 체계와 방식을 결정하면 되겠지만, ①, ②, ③은 사전 조사와 논의들, 그리고 입법 추진과정에서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게 전제된 것이기도 하고, 아울러 미술계 전체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니만큼 공공미술 진흥기금 활용에 관해 진일 보된 논의가 요구된다.

① 주축 (누구를 통해)

당연히 이 땅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새삼스럽게 이런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게 모든 정황상 타당한 이야기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금의 조성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계약까지 했다가 석연치 않은 사유들로 심의에서 연거푸 탈락하면서 작가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이 떠안은 손실금액들이 이 기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우려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형 프로젝트 공모시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달청 나라장터라는 것이 항상 걸림돌이 된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조형물들이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방식은 기준도 기준이지만, 조직이나 과정, 재정 모든 면에서 작가들은 불리한 상황이다. 창의성과 심미적 표현능력 등을 경쟁력을 하는 작가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② 범위 (어디를 대상으로)

공공미술 진흥기금은 지역의 건축물로 출발, 지자체를 경유하여 조성된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지역 연고를 감안하여 일정 쿼터를 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교부금처럼 행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분배가 절실하다.

③ 방식 (어떤 구성과 내용으로)

공공미술 진흥의 용처는 대체로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결정될 수 있다. 지역별 현안과 주민의 요구에 의해 선택된 플랜들 가운데 지자체 매칭 여부에 비중을 두고 적절한 심사절차에 따라 선정 지원해야 한다. 공공미술 발전기금은 좋은 작품들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하지만, 간접적 요인들도 고루 살펴 집행되어야 한다. 창작 지원만이 아니라 아카이브, 정보, 교육연수, 비평 및 큐레이팅 등에도 일정한 할애가 필요하다. 요컨대 목적성 기금인 만큼 현행 '마을미술프로젝트'에 규모와 폭을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공공미술의 유형

- (a) 취약지구 및 공공장소 미적 개선 및 재생
- (b) 시민 예술향유권을 위한 도시갤러리
- (c) 문화관광을 겨냥한 랜드마크
- (d) 주민참여와 커뮤니티
- (e) 심포지엄형 프로젝트 등.

4. 유형별 참고 사례

① 취약지구 및 공공장소 미적 개선 및 재생 - 타이완 가오슝市 보얼예술 특구

현재 우리 주변에 구도심 재생사업이 한창이다. 번창했던 도시들도 도시 주축산업이나 기능이 떨어지면 쇠락해지면서 빈 건물들이 많아진다. 단순히 건축 리모델링으로 재생시키지만, 공공미술이 함께 하면서 시너지를 얻는 사례들이 많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타이완의 가오슝市 <보얼예술특구>(駁二藝術特區)이다. 2006년부터 100년도 훨씬 지난 연청지역 제2부두의 창고들과 철도부지를 단계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전시장, 조각공원, 쇼핑센터, 레지던스, 영화관, 박물관 등의 매머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국제적인 문화명소가 되었다.

특히 '공공미술심포지엄'인 <국제 철조 축제> (International Steel & Iron Sculpture Festival)을 비롯한 공공조형물 및 벽화, 디자인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방대한 미술 컨

텐츠를 갖춘 명소가 되어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국제철조축제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본격적인 특구 조성 전인 2천년부터 시작된 것을 2006년 설립된 피어2아트센터(Pier2 Art Center)에서 위탁 주관하고 있다. 아시아권 조각가들이 초청되어 조선소 등에서 나온 철 폐기물들을 이용하여 공공조형물을 제작하는 심포지엄이 격년 형태로 열리고 있으며, 그 작품들이 조각공원 및 거리, 철도부지, 건물 주변 등에 설치되어 사랑 받고 있다.



[그림 9] 대만 가오슝 보얼예술지구 전경



[그림 10] 예술특구에 설치된 작품

② 시민 예술향유권을 위한 도시갤러리 - 조각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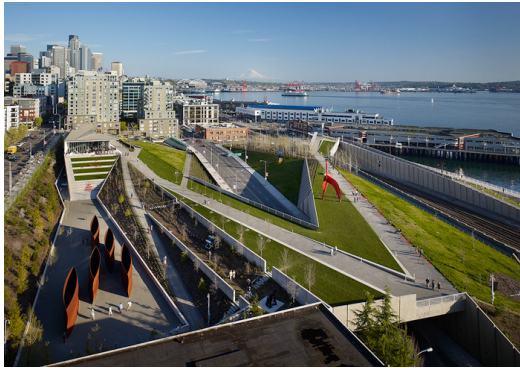
조각공원 하면 좀 식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애틀에 조성된 올림픽조각공원의 경우는 좀 색다른 데가 많다. 시애틀을 창조도시로 부각시킨 랜드마크로 널리 알려져 수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 움스테드 설계로 유명한 불룬티어 파크, 가스웁스 파크, 프리웨이 파크 등 유명공원들이 많은 시애틀에서 가장 사랑 받는 공원이 바로 올림픽산의 이름을 딴 올림픽조각공원이다.

3,6000평 남짓한 석유비축기지였던 부지의 정화작업만도 10년 걸렸고, 경사도가 심한 바다 인접 부지에 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 계획 및 시공이 이루어진 곳으로 17년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된 곳으로도 유명하다. Z자 모양으로 동선을 조성하고 도로 위, 바다, 산책로, 숲, 데크, 계단식 객석, 전시 파빌리온 등의 조화롭고 유기적인 랜드스케이프를 이룬 디자인 완성도는 건축적으로도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1996년부터 시애틀 아트뮤지엄이 주도적으로 제안하여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미술관, 국가예술지원기금,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기업들, 시민단체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결실을 보았다. 리차드 세라, 마크 디온, 테레시타 페르난데스, 마크 디 수베로, 엘스웁스 켈리, 알

렉산더 칼더, 하우메 플렌사, 루이즈 부르즈와, 토니 스미스 등의 작품들이 설치되거나 전시되었다.

‘하코네 조각의 숲’의 경우는 거장들의 조각을 소장하고 있어 많은 유료관람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점도 도시갤러리 차원에서 참작할 필요가 있겠다.



[그림 4] 시애틀 올림픽 조각공원 전경



[그림 5] 알렉산더 칼더, Eagle, 스틸, 높이 12m, 1971. 텍사스, 필라델피아를 거쳐 시애틀로 유치된 작품



[그림 13] 하코네 조각의 숲

③ 문화관광을 겨냥한 랜드마크

공공미술에서 중요한 장소성은 장소의 해석만이 아니라 장소의 창조도 가치가 있다. 랜드마크가 바로 장소성과의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장소를 창출해내는 구조물이다. 대개는 랜드마크가 거대규모를 가져야 유리하고, 그러다 보니 건축에 더 적합한 것으로 이

해하고 있다. 그러나 미술 차원에서도 기발한 아이디어와 형태, 서사 등으로 인상적인 랜드마크 기능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영국의 뉴캐슬을 넘어 전 세계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부상한 게이트헤드에 설치된 안토니 고펠리의 '북방의 천사'(1998),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에 설치되어 시카고의 상징이 된 아니쉬 카푸어의 '클라우드 게이트'(2004), 식물 생태를 공공 조형물에 도입한 제프 쿤스의 '강아지' 시리즈, 14년에 걸쳐 완성된, 엄연히 조각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에서만 주로 논의되는 사우스다코다 러쉬모어Mt. 존 보글럼의 '큰바위얼굴'..... 특히 우리 서울스케어 외벽에서 연출되는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도 도시 야경을 보다 생기 넘치게 만들 뿐 아니라, 미디어아트 강국의 위상을 과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의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설치하는 랜드마크 작품들은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도 미흡한 경우가 많아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랜드마크는 공공미술 가운데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분석, 설계, 재정, 기술력 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개는 그렇지 못하다.



[그림 14] Henk Hofstra, 에 [그림 15] Antony Gormley, ANGEL
그프라이, 칠레 산티아고, 2016 OF THE NORTH, 게이트헤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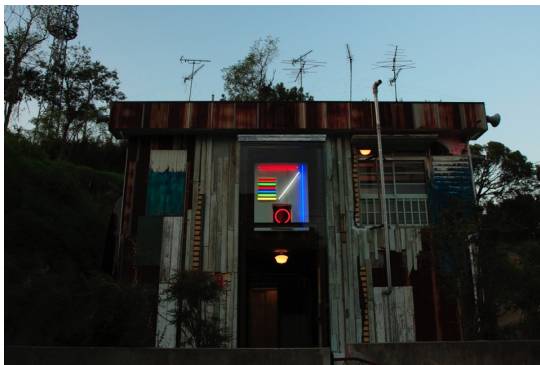


[그림 16] 송도 트라이보울

④ 주민참여에 의한 커뮤니티 아트

공공미술의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난 현상이 주민들이 함께 하는 커뮤니티아트이다. 우리의 마을미술 프로젝트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는 대목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97년부터 입안되어 주민들을 프로젝트나 예술적 컨텍스트로 끌어들이는 교과서와도 같은 사례가 '나오시마 아트 프로젝트'이다. 물론 나오시마가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거장 안도 다다오의 기획력과 지명도, 교육기업 베네세 투자, 지추미술관 등의 독특한 디스플레이 등의 유인효과들이 컸다. 가게, 집 창고, 안방, 신사, 안마당 등이 갤러리가 됨으로써 주민의 삶 깊숙이 파고들 수 있었던 것도 걸출한 기획자의 영향력에 기인한 바 크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미술 방향도 커뮤니티를 소홀히 하고 성공할 수 없다. 과거 경기문화재단이 지원하여 남양주에서 펼쳤던 '논아트 발아트' 역시 지속성을 가진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례였지만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 국내에서 커뮤니티아트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것은 일단 예술적으로 확신을 주는 리더나 기획자들이 보다 장기적으로 기획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림 17] 나오시마 하우스아트 프로젝트



[그림 18] 논아트 발아트 장면 (남양주)

⑤ 공공미술심포지엄

조각의 경우 제작과정 중 관객들과 호흡하며 이해를 넓히는 심포지엄이 미술계에서는 이제 보통명사가 되었다. 올림픽이나 엑스포 등의 세계적인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것을 기념하는 조각공원이나 광장이 조성될 때 이 심포지엄 방식이 효과를 거둔다. 영구적으로 보존할 작품과 반출할 작품을 구분하여 라이브 전시로 행해질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공공미술 심포지엄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공간의 한계에 직면해서는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1977년 시작된 ‘윈스터 조각프로젝트’는 10년이라는 장기적 인터벌을 두고 있으며, 도심 외에도 호수와 녹지 등의 여지가 아직 많고 일부만 시에서 매입하고 있어 작품의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다. 대규모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방식으로는 현재 가장 많이 벤치마킹되고 선호되는 프로젝트이다. 공공미술 진흥에 있어 필요한 행사로서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안양, 창원, 이천, 춘천, 국제조각페스타 등의 공공미술(조각)행사 가운데 선별 지원,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그림 19] 클래스 올덴버그의 작품 ‘거대한 폴 볼’ (1977). 윈스터조각프로젝트



[그림 20] Daan Roosegaarde_스모그 프리 타워, 안양 공공미술프로젝트 2019.

5. 마치는 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는 미술작가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실익을 가져다 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러 각도에서 나타나는 폐단이 마치 작가들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건축주의 취향이나 주민들의 취향과 선호도 등에 따른 제한들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창출해온 작가들이 매도되는 현실, 악화된 여론을 교묘히 이용하여 작가들의 권익까지도 훼손시키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장래를 생각할 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작가들의 희생을 통해 조성된 '공공미술 진흥기금'이야말로 온전히 작가의 권익 회복 차원에서 집행돼야 한다는 작가들의 호소와 주장은 결코 무리한 것,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주제 2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 쟁점

-서울시 및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성옥(조각가, TF위원회 공동위원장)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 쟁점

-서울시 및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성옥(조각가, TF위원회 공동위원장)

목차

I. 제도의 배경

- 1)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 2)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제도(서울시 중심)
- 3) 정책 방향 개선의 필요

II. 미술작품 심의제도 문제 제기

1. 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

- 1) 심의위원 구성의 공정성 결여
- 2) 심의기준 및 과정의 개방성 결여
- 3) 작품의 주체성과 민주성 결여
- 4) 유지, 보수의 체계적 관리 결여
- 5) 심의 위원 구성의 편파성

2. 사례연구

- 1) 동일 작품의 심의 통과 사례
- 2) 특정 작가 집중과 예외적 심의 결과

III. 맺음말

서울시는 2017년 11월부터 기존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접목하여 실행 중이다. 경기도 역시 2019년 9월 18일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방침을 변경하기로 발표하였다. 모든 제도는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고 그 설립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며 공익을 위해 잘 실천되어야 한다. 2020년 3년을 맞는 서울시의 현행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와 경기도의 심의위원회 운영은 전문성과 심의의 엄격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성취는 공감하나 운영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들에 대한 미술시장의 우려가 섞인 목소리가 크다. 공공미술은 말 그대로 일반대중과의 만남이다. 전문성만큼이나 대중성이 요구된다. 현행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한다. 다만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가 일치하지 않아 사안에 따라 지역명칭을 표기한다.

I. 제도의 배경

1)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제도
- 2011년 개정된 법에 따라 ‘건축물 미술장식’이라는 용어가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변경됨
- 민간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이를 선택적 기금제라 하며, 출연 금액은 미술작품 설치 비용의 100분의 70에 해당
- 관련법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12조 ~ 제15조임
- 미술작품의 설치절차와 방법,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사후관리에 따른 사항, 기금출연의 절차와 방법 등은 시행령에 지정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함

2)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제도(서울시의 경우)

- 순수문화예술의 진흥과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예술성, 공공성, 가격 적정성 등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7. 11. 19) 시행에 따라 ‘미술작품심의위원회’가 재구성됨
- 주요변경내용

	기존	변경
위원수	80명 이내	20명 이내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1년, 3회 연임 가능
회의구성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윤번제)	전체 위원으로 구성
심의접수	건축물 승인 후	건축물 승인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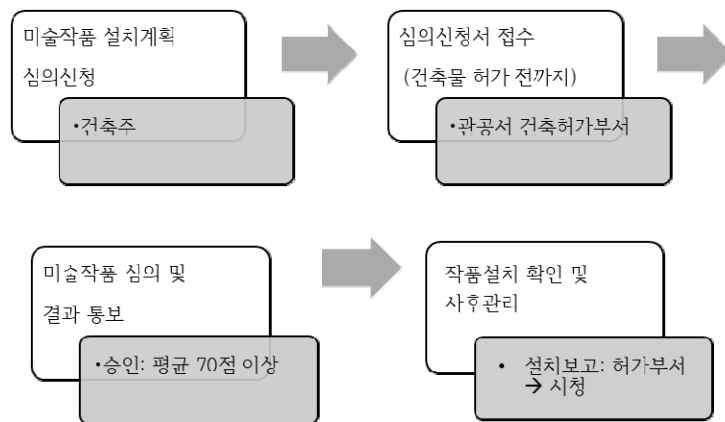
- 기존 80명 위원을 윤번제에 따라 운영하며 전문성, 책임성, 일관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재구성이 추진됨
-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에 맞추어 ‘공공미술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로 2배수의 후보 추천을 거쳐 내부심사 후 심의위원 최종 선정함

○ 위원구성변경현황

- 2017. 11 심의위원회 재구성 이후 55% 변경율을 보임

	해촉	위촉
2018. 7	6인	6인
2018. 9	1인	1인
2018. 11	2인	2인
2019. 7	1인	예정

- 미술품 심의절차



- 채점표에 따라 미술품을 가격, 예술성,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접근성, 안정성, 유지·보존 등을 심의함

3) 정책 방향성 개선의 필요성

- 건축물 미술품 제도는 의무화된 1995년부터 건축적, 문화적 정책 거버넌스의 영역으로 여겨짐

- 최근 공공미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며 건축물 미술작품에 공공적 성격 대입 요구 하나,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따른 설치장소는 사적재산이기에 그 한계가 존재함
- 심의위원회 개편은 그 목표를 건축물 미술작품의 질적·양적 관리에 두었으나,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의 역할을 대부분 을의 입장인 작가에게 부담시키고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인 '도심 흉물'이나 무분별한 양적 성장은 사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사후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 제도에 대한 변화는 사전 심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II. 미술작품 심의제도 문제 제기

- 서울시의 경우, 2017년 11월 심의위원 재구성 이후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미술작품 심의 신청 건수는 820건임. 이 중 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에 이미지가 없는 2019년 5월(17건)과 6월분(18건)을 제외한 총 785건 분석결과 승인 327건, 부결 458건의 결과를 보임 (통과율 42%)
- 경기도의 경우, 2019년 17차(15작품), 18차(18작품) 심의에서 부결 100%로 심의 대상작품 모두 탈락

1. 심의위원회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

1)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결여

- 서울시 건축물미술작품 심사위원 구성분포를 보면 미술분야 전공자 7명(입체5명, 평면2명), 디자인분야 2명, 미술이론 전공자 3명, 건축분야 3명, 조경분야 2명 그리고 당연직 3명(문체관광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 서울시 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심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각 전공자들은 전체 심의위원구성의 25%이고 실제 심의진행에 있어 개인적 사유로 전공자가 불참하는 경우 전체 심의구성원의 70~80%의 유사전공자나 비전공자들이 전공자의 작품을 심의하는 현황
- 심의과정은 점수제가 아닌 토론형식으로 운영함. 토론제의 장점인 보완, 개선의 조건부 운영은 없고 당락 결정에 의한 심의위원 분야별 전문성 피력보다는 각자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수 전공자의 취향을 추종하거나 개인적 호/불호에 의한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함(서울시, 경기도)

- 서울시의 경우, 20명의 고정된 심의위원이 3년간 심의를 진행하는 경우, 개인적 심의영향이나 선입견에 대한 편중이 심하여 특권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음. 경기도는 고정된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제도를 운영하여 동일한 문제를 내포함.

2) 심의 기준 및 과정의 개방성 결여

- 개별 평가의 주장이나 인지관계에 의한 당락을 지양하기 위해 뚜렷한 심의기준을 공개하고 그 기준에 따른 정량적인 결과가 필수적이라고 사료되나 현재 심의에서는 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함.
- 심의과정의 폐쇄적 진행은 미술작품의 질적·양적 수준 향상의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에 관한 혼란과 의심을 더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함

3) 작품의 주체성과 민주성 결여

- 건축물 미술작품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이 아니라 건축물과 어우러지는 독립된 예술 작품임
- 주로 공적기관 건축물에 적용하는 외국의 ‘미술을 위한 퍼센트법(Percent for Art)’과 달리 한국은 민간 건축주나 시민들의 재산과 연결된 사적 소유물임. 경기도의 경우, 100% 심의탈락을 통한 무리한 공모제 및 기금출연 선호의 정책으로 재산권침해의 위험소지가 있음.
- 건축주 혹은 작품의 실제 향유자의 선호도는 전혀 고려되지 못함
-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의의 연이은 부결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건축주와 건축 관련자(화랑, 기획사, 작가)의 경제적 손실 발생

4) 유지, 보수의 체계적 관리 결여

- 작품 생애주기, 건축물 미술작품 보험, 유지관리비용 등 관련 가이드라인 부재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책이 부재함


5) 심의위원구성의 편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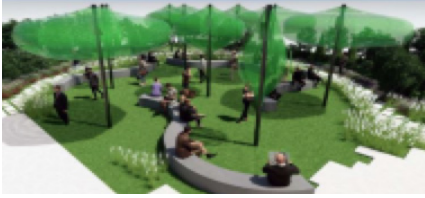
- 서울시는 특정 2개 대학 졸업자로 전공자의 100%를 구성하고 있음

2. 사례연구-객관적 심의지표의 부재 (서울시 사례 중심)

1) 동일작품의 심의 통과 사례

- 동일 작품이 별 다른 변화 없이 재심에서 승인을 득하거나, 작품 자체가 아닌 작품 주변에 변화를 주어 승인을 득한 사례 확인함

작품명: Butterfly Rider		
		
2018년 6월 10차 심의 부결	2018년 7월 12차 심의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미의식을 제공하지 못함 • 작품은 문제 없으나 안전성이 문제 • 작품가 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접근할 수 없도록 회양목을 군식으로 식재하여 접근을 막아야 함 	
작품명: AURELIAN 2018-Empress Issoria II		
		
2018년 9월 15차 심의 부결	2018년 10월 17차 심의 부결	2018년 11월 18차 심의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식성에만 치우침 • 상투적 대중성 • 작품가 과다 • 설치장소 부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적 상상력 미흡 • 키치적 요소가 다분 • 수정하지 않은 듯 • 설치장소 부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을 화사하게 만들 • 조형성이 심미적 취향에 따라선 흥미로움 • 설치장소 큰 무리없음
작품명: AURELIAN 2018-Heath Fritillary IV		
		
2018년 9월 15차 심의 부결	2018년 10월 17차 심의 부결	2018년 11월 18차 심의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나치게 장식적 • 동시대 미의식 부족 • 작품가 과다 • 설치장소 부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해한 조형성 • 주변 환경과 부조화 • 지난 신청 작품에서 크게 수정되지 않음 • 설치장소 부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한 작품 • 조형성이 심미적 취향에 따라선 흥미로움 • 옥외환경에 적합한 주물작업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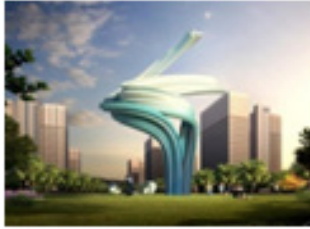



작품명: 원심림	
	
2019년 6월 8차 심의	2019년 7월 9차 심의
부결	승인 (유지보수비용 예산안 포함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환경에 설치예정이므로 유지·보수와 구조 안정성 검토 필요 • 관리 측면에서 빛 공해, 경관침해 문제 등이 걱정됨 • CG에선 깔끔해보이나, 실제 설치에선 조잡해보일 수 있으므로 해결방안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미술의 스펙트럼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음 • 유지·보수만 잘된다면 신선한 시도 • 옥외환경에서 내구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영구설치보다는 기한 한정 전사가 나을 듯 • 작품가 과다


2) 특정 작가 집중과 예외적 심의 결과

- 기존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의 특정 작가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자 했으나, 현 심의위원 조직 후 유사한 쏠림 현상이 나타남
- 유사 형태를 반복적으로 쓴 경우, 아래의 특정 작가들에게는 예술성(창의적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음. 해당 작가들의 조형적 변별성 역시 이미 다수의 작가들이 공유하고 있어 매우 구태의연한 조형방식임에도 심의에서 지적된 바가 없이 모두 승인됨

작가: 강○○	
4회 신청/ 4회 승인	
	
온고지신	온고지신-꽃잎
2019년 1월 1차 심의	2019년 4월 5차 심의
승인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무리 없음 • 위치변경 가능 •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난한 작품 • 작은 타일을 부착하는 방식이 흥미를 유발함 • 작품 설치 위치에는 애매한 규모
	

<p>온고지신-용오름</p> <p>2019년 8월 11차 심의</p> <p>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창적이진 않으나 무리 없음 • 공간을 잘 활용함 • 타일이라는 재료를 잘 선택함 • 작가의 평소 경향과는 괴리된 작품 	<p>온고지신-새싹</p> <p>2019년 10월 12차 심의</p> <p>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일의 재료와는 잘 어울리나 전체 조형이 평이함 • 공간에 귀여운 느낌을 줄 수 있음 • 모자이크 타일의 선처리가 정교할수 있을지 의문이 있음
<p>작가: 김○○</p> <p>6회 신청/5회 승인</p>	
	
<p>숲을 머금다</p> <p>2017년 12월 18차 심의</p> <p>승인</p>	<p>흐름을 머금다</p> <p>2018년 1월 1차 심의</p> <p>부결</p>
<p>심의회의록 비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무리 없음 • 주변 건물에 비해 크기 작음 • 그래픽처럼 표면이 깨끗할지 의문
	
<p>Wave on</p> <p>2018년 2월 2차 심의</p> <p>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형적으로 진보가 있음 • 금액에 비해 크기가 작음 •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크기를 키우는 것이 효과적 	<p>Bubble-또 다른 공간</p> <p>2018년 6월 10차 심의</p> <p>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성이 높음 • 기능성을 결합하였다는 점도 좋음 • 대체적으로 무난
	

Wave-어울림	Wave-공간의 흐름
2018년 10월 16차 심의	2019년 10월 12차 심의
승인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한 조형물 다수 • 무리없고 무난함 • 여유없는 공간에 수직상승하는 형태라 답답한 느낌이 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형적 개연성이 아쉬움 • 단순하지만 공간과 조화로움 • 전체적으로 세련미가 느껴짐
작가: 김○○	
5회 신청/5회 승인	
	
꿈-dream	The Breeze (미풍)
2018년 2월 2차 심의	2018년 2월 2차 심의
승인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런 류의 작품이 기호화됨 • 작품은 곡선, 좌대는 직선이라 어울리지 않음 • 조명 설치가 안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공간이 시원해 보임 •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림 • 조명과 작품 거리가 너무 가까움
	
Moving Dream (동일작품)	
2018년 10월 16차 심의	2019년 7월 9차 심의
승인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관된 작가 정신 아쉬움 • 무난한 작품, 금액 과다 • 곡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음 • 장소맥락상 애매하나 관객참여 형태로 발전시키면 좋을 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된 위치가 더 적합함 • 장소가 가지는 의미나 상징성은 적어보임
	
Move in Sky (하늘을 드나들다)	

2019년 8월 10차 심의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동성 잘 표현한 무난한 작품 • 장소와 적절히 조화됨 • 무난하지만 유사작품 다수 존재 	
작가: 오○○	
3회 신청/ 3회 승인	
	
From the Form	From the Form
2018년 3월 5차 심의	2019년 6월 8차 심의
승인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뚱뚱한데 벽이 있어 답답해보임 • 주변과 부조화 • 줄거리가 흥미로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하고 친근하나 경쾌함 • 협소한 공간이나 작품과 조화됨 • 조형성이나 작품성이 평이함
	
From the Form-프레임	
2019년 9월 12차 심의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분하고 묵직한 중량감 • 작품,작가 변경된 것이 훨씬 좋음 • 작가만의 개성이 잘 드러남 	
작가: 채○○	
6회 신청/ 4회 승인	
	
The Petals	Dreaming Raindrops
2018년 2월 2차 심의	2018년 4월 7차 심의
승인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잎 형태가 어색함 • 작품이 둔탁한 느낌이지만 작품 캐릭터인 듯 • 겨울에는 보기 좋을 듯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에 대한 개념을 잘 활용함 • 새로운 형태이지만, 안전성에 신경써야 함

	
Dream of Dreaming 2018년 10월 17차 심의	By the Wind 2018년 11월 18차 심의
부결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상한 해석으로 동어반복적 작품 • 공간과 잘 어울림 • 관객친화성이 돋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이한 해석과 형상 • 대중적인 환경에 적합 • 미려한 조형성으로 작품성 돋보임
	
Circulus 2019년 2월 3차 심의	Vitality 2019년 7월 9차 심의
승인	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형성과 컨셉이 좋음 • 장소성을 대중에게 잘 전달 • 서클에서 반지로 의미전환 비약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안정성 문제 • 공간의 장소성에 대한 고찰 아쉬움 • 작가 기존 설치작과 유사

Ⅲ. 맺음말

한국의 공공미술은 짧은 역사이지만 교육적, 향유적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를 가두었다. 건축과 공공미술이 함께 성장하기 시작한 지 20여 년이 지났다. 수 백년의 역사를 가진 유럽의 도시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길에서 만나는 공공미술을 바라보며 누군가는 인생을 생각하고 잠시 쉬를 얻기도 하며, 사람들의 사진 속에 배경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은 작품을 보고 웃으며 성장한다. 삶과 예술이 하나로 어우러진 도시 속에서 예술이 빛나고 피어나야 국민과 나라가 풍요로워 진다. 세계인들이 유럽을 동경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화는 산업이며 국가경쟁력의 중심이다. 영화, 드라마 등 한류의 문화는 세계의 정상에 깃발을 꽂고 한국의 경제 산업의 중심에 있으며 한국의 위상을 더 높이고 있다.

미래 산업의 주인공은 미술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진하는 작가들을 위해 강력한 힘

을 실어 주어야 한다. 예술이 국력이 될 수 있도록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미술발전과 미술인의 권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

공공미술은 경제와 직결되는 관광산업이다. 전 세계가 점점 획일화 되어가는 도심 속에서 나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규모와 폭을 더 확대하여 세계적인 작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국내작가에게도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

미술계를 위축시키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심의제도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 독과점과 적폐를 외치는 몇몇의 잘못된 편견이 한국의 공공미술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한국미술의 무한한 발전과 가능성을 와해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술산업은 유럽의 피카소, 일본의 야요이 쿠사마처럼 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와 경기도가 선두에 서야 한다. 기업의 마케팅을 위해 신세계백화점 옥상에 설치된 160억원대의 조각(제프쿤스)과 동탄에 설치된 수십억원대(카우스)의 작품은 시대의 흐름이고 요구이다. 우리나라미술도 해외에 수출하는 시대의 장을 열 수 있도록 작가를 위한 제도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시행되어야 한다. 자유경쟁의 원칙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현행 제도의 배경과 그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밝힌다. 사)한국미술협회와 사)한국조각가협회는 협력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책을 2020년 2월 중에 “공공미술 포럼”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별첨: 채점표, 선택적 기금제 설명

○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

[별지 제8호서식]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제8조제1항 관련)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

심의번호		심의일자		
품명				작
평가기준 및 배점				
가격	(20)	-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예술성	(20)	-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20)	-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접근성	(20)	-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가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며 공공미술로서의 가능성이 있는가?		
안정성	(10)	- 해당 미술작품이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 해당 미술작품이 일반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가?		
유지·보존	(10)	-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가산점	(10)	- 공모절차가 적정한가? ※ 공모를 통해 제작·설치되는 작품에 한함		
점수계	110			
판정	적합	(70)점 이상일 경우		
	부적합	(70)점 미만일 경우		
비고	부결 및 조건부 사유			

선택적 기금제란?

- 선택적 기금제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한 제도임
- 기금 출연의 법적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9조에 따른 것이며,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 건축주임. 2011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12조 6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해당하는 금액의 70%를 기금 출연함
- 출연 방법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13조의 2 (기금출연의 절차·방법)에 근거하며, 건축주는 지정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계획서를 제출함. 기금 출연이 완료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출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함
- 선택적 기금제의 도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관리 주체가 되어 조성된 기금을 문화예술 발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음
- 법인은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 손비처리가 가능하고,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한도로 소득공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같은 기간(2011-2018) 동안 기금 출연 건수는 미술작품 설치건수(6,646건)에 비해 단 3.6%뿐, 기금 집행은 2014년 이후 이루어지지 않음

○ 문예기금 출연 및 집행내역 (2011년-2018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건수	2	9	18	18	31	42	46	76	242
금액 (백만원)	145	902	1,010	1,144	2,716	3,181	4,762	8,138	21,998
집행금액 (백만원)	-	100	100	100	-	-	-	-	300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12 공공미술 연례보고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간)에 따르면 건축주들은 기금 출연 사유로 사용승인 일정 압박과 기금 출연 할인 혜택을 대표적으로 꼽았고, 작품 설치에 따른 행정 절차의 복잡함, 작품 사후관리의 번거로움, 심의 부결, 비용 대비 효율성으로 확인함

- 『2012 공공미술 연례보고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간)에 따르면, 기금 출연 저조 원인은 건축주에 대한 낮은 유인 효과, 출연 기금의 불분명한 사용으로 인한 주인의식 저하, 홍보 부족, 일부 건축주의 리베이트 요구 및 중개업체 수수료 요구 등으로 보았음
- 기금 납부 금액 대비 세제 혜택이 크지 않고,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기금을 납부 하더라도 예비 거주민의 항의로 인해 미술작품을 재설치 하는 등 이중 경비부담이 있던 사례도 위의 보고서에서 확인됨
- 건축주가 선택적 기금제보다 미술작품 설치를 선호하는 것은, 자산 개념으로 미술작품을 보거나, 작가 혹은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해 선택적 기금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음
- 이면 계약의 가능성을 낮추지 못한다면, 기금의 세제 혜택 효율을 높인다 해도 인과적으로 작품의 질이 저하될 것임
- 선택적 기금제와 관련된 문제를 개선한다면 현재 건축물 미술작품과 관련된 문제 또한 근본적이고 자발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

주제 3

공공조형물 건립에 있어 입찰방식에 대한 제도개선

유재흥(조각가, TF위원회 위원)

공공조형물 건립에 있어 입찰방식에 대한 제도개선

유재흥(조각가, TF위원회 위원)

1 공공조형물 개요

□ 공공조형물 정의

-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건립된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함
- 각 지역별로 상징적인 공공조형물을 건립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조형물은 여러 분야에서 수많은 형태(환경조형물, 환경조각, 환경미술, 공공미술, 야외조각 등)로 존재, 미국과 서유럽에서는 공공의 성격으로 일상공간에 건립되므로 '공공미술'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박삼철, 「공공미술과 도시의 미래」)
- 조형물은 그 자체가 미술품으로서 미적 대상인 경우도 있지만 공공 공간에 놓여 지역적 아이덴티티의 표현이기도 함(김정민, 「경상시론」)

※ 근거 : '14. 9월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 참고자료로 제시한 표준조례안 제2조 제2호

□ 건립근거

-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를 규율하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은 없으며, 건립방법·건립 장소에 따라 관계법령 적용 및 조례로 규정
- 건립방법
 - 물품구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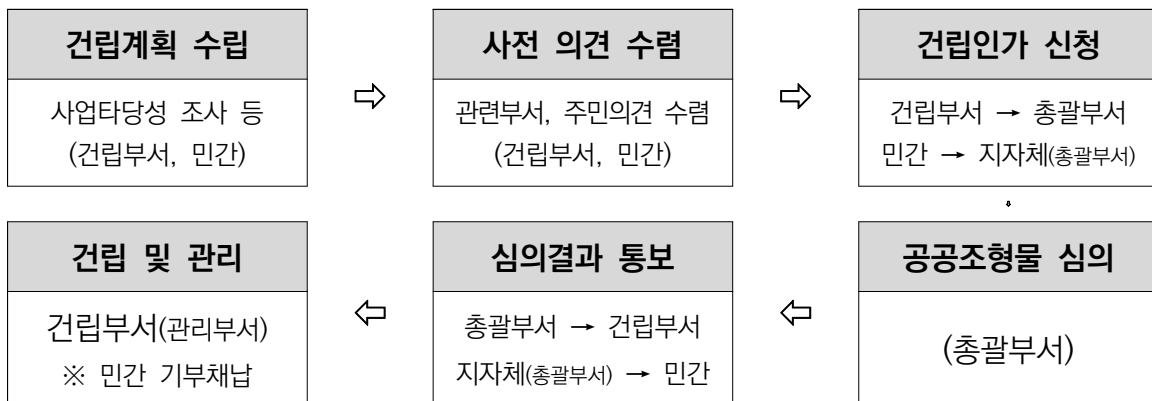
- 공작물 축조 및 광고물 건립에 의한 방법
 - 공작물 축조 신고 : 건축법
 - 광고물 건립 신고 :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 **건립장소 : 개별 법령 적용**
 - 하천 : 하천법(하천점용 허가)
 - 고속도로·일반국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거리제한)
 - 건립주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기부채납)
 - 농지 : 농지법(타 용도 일시사용 협의)
 - 도로 : 도로법(사설안내표지판 금지)
- **건립기준 등 : 조례(범위, 기준, 건립, 심의, 관리 등 규정)**

〈참고〉 옥외광고물과 공작물의 개념

- **(옥외 광고물)** 조형물에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 문자 등이 표시되고 공중에서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한 심벌 조형물이 광고적(지역 특산품 등) 기능인 경우에도 적용됨(안전행정부)
- **(공작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공작물의 설치), 시행령 제51조·제53조(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
 - 건축법 제83조, 시행령 제118조, 시행규칙 제41조(옹벽 등의 공작물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함)

□ **건립절차**

지자체 조례로 정하되, 신청, 관련부서 및 주민 의견수렴, 조형물 심의 절차를 거친 후 건립(공공조형물 표준조례안)



□ 공공조형물과 유사한 물품

구분	건축물 미술작품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개념	도시환경 개선과 문예진흥을 위해 일정 규모(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건축비용의 일정비율(1% 이하) 금액을 회화·조각 등 미술장식에 사용토록 하는 제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관·관리와 도난·망실·훼손을 방지하고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을 효율적으로 관리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건축주는 건축비용의 0.7%이하를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 건립·관리(1972년 권장사항 도입, 1995년 의무화)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3조에 따른 한국화,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의 미술품으로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상
개선 권고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2006. 5, 청렴위)	「공공기관 미술품 취득·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2011. 6, 권익위)

정부미술품 · 건축물 미술작품 · 공공조형물 비교

구분	정부 미술품	건축물 미술작품	공공 조형물
내용	취득(평가)가격이 50만원 이상인 중앙관서 소유 미술품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신축 또는 증축 할 때 ①건축비용의 1%이하를 미술작품의 건립에 사용하거나 ②건립비용의 70%를 기금으로 출연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건립한 동상, 기념비 및 조형물 등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관리법 시행령 •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 규정(조달청) • 정부미술품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 정부미술은행운영규정(국립현대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12~15조) • 자치단체 조례 ※ 세종특별시(2013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법령 없음 • 자치단체 조례, 규칙, 예규, 지침 등 ※ 조례 10, 규칙 4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화,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 박물관, 미술관에 소장되어 별도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미술품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품 • 분수대, 상징탑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상, 기념탑, 기념비,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

소 유	중앙관서	건축주 ※ 저작권 : 작가	자치단체장
취득/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미술은행 중앙관서 	건축주 ※ 광역별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단체장 건립주체(개인, 법인, 단체) ※ 지자체 심의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관서 미술품관리시스템(사이버갤러리, 조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광역)자치단체장 공공미술포털(한국문화예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단체장 건립주체(개인, 법인, 단체)
점 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실태 연 2회(1,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태점검 연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태점검 연 1회
사후 관리 (망실, 훼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관리법령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주 귀책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 원상회복 명령 - 건축주 : 원상회복 의무 ※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규정 없음 	-
보유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45개 중앙관서 16,749점 55,43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개 기초자치단체 14,017점 985,16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4개 지방자치단체 3,534점 433,065백만원 *1,123점 미확인
작품 변경/ 위치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청(문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위원회 심의 	-

□ 지자체별 공공조형물 건립현황

○ 전국에 건립된 공공조형물은 '19년 6월 기준 6,287점, 추정금액 약 1조 1,254억원 규모

※ 243개 지자체중 163개 기준, 80개 지자체는 공공조형물 현황 미관리

※ '14년 조사시에는 '13년 말 기준 3,534점, 약 6,347억 8천만원 규모이며, 실제 확인 금액은 2,411점, 4,330억 6천 5백만원임

※ 추정금액은 '14년 조사 당시 실제 확인된 자료상의 조형물 1점당 평균금액(179백만원)을 기준으로 환산

○ 지역별로는 경기(1,393점, 22.2%), 서울(949점, 15.1%), 부산(777점, 12.4%), 경남(400점, 6.4%) 순

- 조형물 종류별로는 일반조형물(3,800점, 60.4%), 기념·추모비(1,133점, 18.0%), 기념·상징탑(345점, 5.5%) 순

〈 지역별 공공조형물 현황 〉

(단위 : 점)

지역구분	계	일반 조형물	동상	기념, 추모비	기념, 상징탑	벽화 등 미술작품	기타 (표석 사진 등)
계	6,287	3,800	333	1,133	345	308	368
서울	949	653	77	115	14	66	24
부산	777	310	23	87	76	156	125
대구	99	17	13	54	10	0	5
인천	384	146	27	36	30	12	133
광주	208	161	25	9	11	0	2
대전	361	54	7	276	7	17	0
울산	272	225	6	34	7	0	0
세종	19	13	2	2	2	0	0
경기	1,393	986	43	251	49	5	59
강원	222	169	5	22	10	0	16
충북	288	154	47	38	29	20	0
충남	70	36	5	18	8	1	2
전북	278	193	15	52	15	3	0
전남	255	179	10	22	32	12	0
경북	294	273	6	7	4	3	1
경남	400	227	20	109	36	8	0
제주	18	4	2	1	5	5	1

□ 권고일자 : 2014. 9월

□ 권고대상 : 243개 지방자치단체

□ 주요 권고내용

구 분	권고과제
1.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형물 건립·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미제정 지자체) ○ 기존 조례 개정(조례 제정 지자체)·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주기 반기별 1회 이상으로 단축, 심의위원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 규정, 심의위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담당부서 지정 등
2. 건립심의위원회 설치 등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형물 구입 및 건립절차의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 이해충돌 방지규정 마련, 사전심사제 실시, 저작권자 사전동의 등 ○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등 주민동의 절차 마련, 심의위원회 주민대표 참여 등 ○ 건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 자격기준, 비율, 심의기준·절차·심의결과 공개 등 운영기준 마련 ○ 공공조형물 선정 심사의 내실화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디어 심사, 실행심사 구분 등 심사 방법 구체화 등
3.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 시스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상태 및 안전점검 실시, 연간점검계획 마련, 시민 모니터링제 실시 ○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대장 및 시스템 마련, 장기적으로 전국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 조형물 관리업무의 일원화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부서 선정, 조형물 대장 관리 일원화, 연간관리계획 수립·시행 ○ 공공조형물의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문화공간 제공, 문화·교육프로그램,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2 공공조형물 현행 관리실태

구 분	관리실태
1.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공공조형물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기본적인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조형물 지속 건립 ○ 공공조형물 담당부서가 정해지지 않아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도 상당수 존재
2. 건립심의위원회 설치 등 공정성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권고 취지와 달리 민간 건립 조형물만 관리하고 지자체가 직접 건립하는 조형물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의위원회를 공무원 위주로 구성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미흡 ○ 조형물 선정 및 건립과정에서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거나 실제 주민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발생
3.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 점검 시스템 부재 및 미시행으로 인해 조형물이 파손되고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 발생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총괄부서가 있음에도 현황 조사, 관리대장 작성 등 기본적인 사후관리 조차 미흡한 실정 ○ 조형물 발주과정에서 뇌물 수수 사례가 되풀이 되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3 미술인 관련 현행 주요 문제점

- 공공 조형물 용어에 따른 미술인 자존감 실추
- 심사 시 평가기준에 비율의 비합리성
- 평가위원 모집 공고제로 인한 부작용
- 사후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지역주민의 원성과 실효성 실추
- 공공 조형물 입찰방식에 있어 업체 선정으로 미술인 참여 불가능

4 공공 조형물 입찰에 있어 개선안

□ 공공 조형물 용어에 따른 미술인 자존감 실추

- 현 입찰제도에서는 미술인들이 공공 조형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있어도 조형물이란 통괄적 용어 사용으로 미술인이 주도하거나 개입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술인의 자존감 실추 및 미술작품설치의 부정적 평가로 미술인의 권익이 위태로움에 처함. 따라서 공모용어 선택에 있어 실질적이고 타당성 있는 용어로 규정되어야 함.

구분	현행 용어	권고 용어
개념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건립된 동상, 기념탑,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을 말함(자치단체 조례) 사전적의미 조형물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형태나 형상을 만듦 물체	공공 조형 시설물, 환경조형 시설물, 환경조형물, 조형작품, 조형예술품 등 작품공모의 세분화를 통하여 일관된 선정 방식이 아니라 용어의 구체화 용어의 구체화는 사업추진의 근간이며 사업의 마무리

□ 심사 시 평가기준에 비율의 비합리성

○ 평가의 기준은 대부분 조형물 업체 선정으로 이루어짐으로 업체의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로 이루어짐. 비율은 기술능력평가 80% (사업수행능력평가 : 20% + 사업계획평가<정성평가>60%), 입찰가격평가 20% 이다. 이 비율은 지자체 및 사업 내용에 따라 변동 있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비율은 건전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이유로 심사 시 선정된 작품이 탈락하는 경우를 초래할 우려성이 많으며, 신생업체 및 작가는 입찰 참여에 불가능함을 가져옴 따라서 합리적 비율 및 사업수행능력을 점수제가 아닌 자격제로 개선하여 사업취지에 맞는 작품이 선정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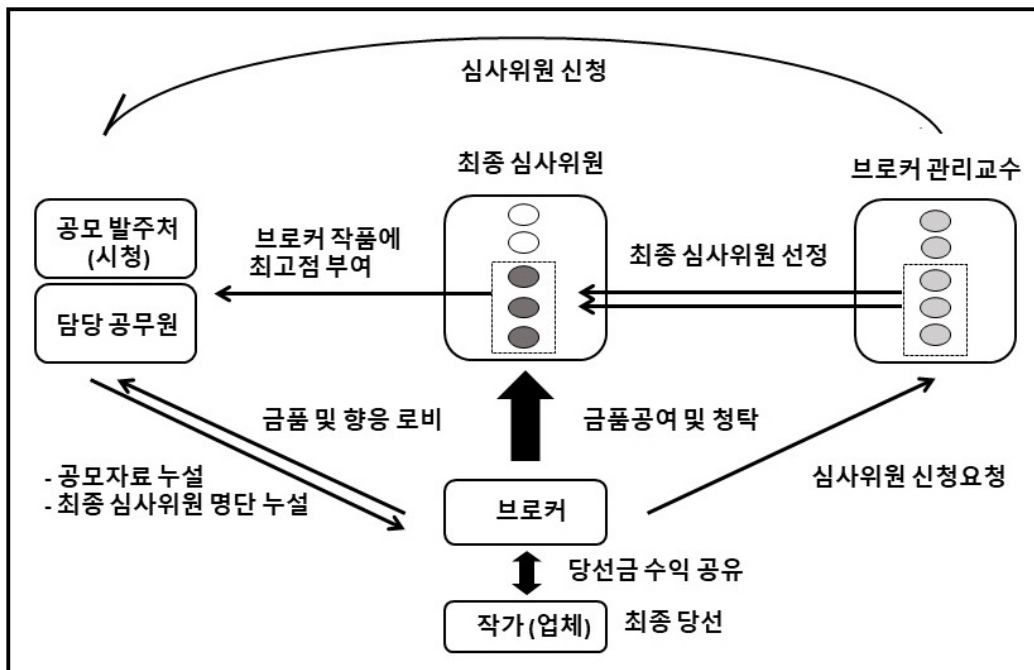
평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사업계획평가	입찰가격평가	총점
20점	60점	20점	100점

○ 평가기준 예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20점)	사업 수행 능력 평가 (20점)	소 계		20	담당자 평 가
		사업수행	최근 5년간 수행실적(실적 금액)	5	
			최근 5년간 수행건수(1억원 이상 건수)	5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상태(사업참여 인력)	5	
		경영상태	최근 연도 신용도 평가	5	
	사업 계획 평가 (60점)	소 계		60	심사 위원 평가
		기술·지식 능 (40)	조형물 재료와 조형물과의 조화	5	
			상징기념탑 제작목적을 이미지화한 상징성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10	
			주변 경관과의 조화	5	
			미적 구성 원리에 충실한 조형성	5	
			타 조형물과 구별되는 작품의 독창적 예술성	10	
			조형물의 구조와 안전성	5	
		사업수행 계획 (10)	기본계획의 방법론 및 수행절차	5	
			조형물 추진전력의 적정성	5	
지원기술·사후관리 (5)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상호협력관계 (5)	기타 제안사항(위에서 제시되지 않는 여수시에 추가로 제안할 내용을 기술)	5			
입찰가격평가 (20점)	소 계		20	평점 산식	
	가격 제안서 평가		20		

□ 평가위원 모집 공고로 인한 부작용

- 설치 사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령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준도 통일되어있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이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에 관한 사후 감독도 부실한 실정임
- 개별 공모마다 심사위원(평가위원 공모)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심사위원 풀을 이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
- 통상 7인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 수를 15인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심사위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학교수 외에 관련 분야 공무원 및 전문기관 종사자가 일정 비율 이상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도록 개선
-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위원 선정 사실을 심사 직전에 통지함으로써 업체들이 심사위원에게 청탁할 여지를 봉쇄하고, 청탁 받은 심사위원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며, 심사위원들이 업체의 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강릉지청 수사결과 보도자료

□ 사후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지역주민의 원성과 실효성 실추

-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주체가 지자체라는 것만 명확할 뿐, 법령과 조례 미비, 사후 관리 시스템 부재 등으로 부실 방치 사례 빈발
 - 지자체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이 다른 시설물 점검보다 적으며, 관리시스템 부재 및 훼손·손실시 폐기 규정 부재로 흉물 방치 가능
- 개선방안 (국민권익위원회 2019 참조)
 - ① 관리기관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등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 ② 관리기관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연 1 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은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④ 관리기관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공공 조형물 입찰방식에 있어 업체 선정으로 미술인 참여 불가능

- 공공조형물 입찰에 있어 대부분은 조달청 공모를 통한 업체선정으로 이루어짐. 이러한 제도는 개인보다는 행정상 실행 능력에 있어 업체가 그 능력 및 책임성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미술작품 관련 사업임에도 업체선정의 실행으로 많은 부조리의 양

산과 혈세 낭비, 조형물의 질적 저하 등 부실한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부분 별 작가(미술인)참여 및 작가협업을 통해 진정성 있는 조형물 건립 및 미술문화 정책에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됨.**

문제점	개선점	향후
<p>통괄적 공공 조형물 용어에 따른 미술인 자존감 실추(대외적으로 작가의 책임으로 전가)</p>	<p>공모용어 선택에 있어 실질적이고 타당성 있는 용어로 규정되어야 함.</p>	
<p>심사 시 평가기준에 비율의 비합리성(전문가에 의한 선정에 관계없이 업체의 수행능력평가, 최저입찰에 의해 최종선정 돼서 작품의 질이 떨어짐)</p>	<p>합리적 비율 및 사업수행능력을 점수제가 아닌 자격제로 개선하여 사업취지에 맞는 작품이 선정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p>	<p>- 미술인 참여</p>
<p>평가위원 모집 공고로 인한 부작용(공무원 및 몇몇의 업체의 관계에 의한 심사위원으로 구성으로 부정확한 심사 결과 초래)</p>	<p>심사위원 선정 방식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및 연구 필요</p>	<p>- 공공조형물의 질적 향상 - 미술인의 명예회복</p>
<p>사후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지역주민의 원성과 실효성 실추(관리대장 및 관리 부서가 없는 관계로 주민들과 지역의 문제점으로 인식됨)</p>	<p>사후관리 시스템의 체계화와 규정화로 건립과 실효성의 일관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p>	

○ 공공조형물 예시

이미지	문제점	용어 개선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괄적 공공 조형물 용어에 따른 미술인 자존감 실추(대외적으로 작가의 책임으로 전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형시설물 환경조형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부족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철거요구 - 전문가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검토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부족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철거요구로 철거 - 철거 시 예술적 가치부족으로 인한 고철로 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검토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괄적 공공 조형물 용어에 따른 미술인 자존감 실추(대외적으로 작가의 책임으로 전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형시설물 환경조형시설물